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①】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②】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함

감정평가서

의뢰인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경환
건명	고정은 외 4명 소유물건(2024타경72249)
감정서번호	K2406-2-0506

(토지)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박민성

프라임감정평가법인(주) 경기지사 지사장 이윤창 (서명또는인)

감정평가액	일십이억칠백칠십삼만사천원정(₩1,207,734,000.-)					
의뢰인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경환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수원지방법원 경매14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고정은 외 4명 (2024타경72249)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4.06.07	2024.06.07	2024.06.19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9,258		9,258	-	1,207,734,000
		이	하	여	백	
	합계				₩1,207,734,000	
심사 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인) 김철홍					

I. 감정평가개요

1. 평가목적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소재 "완장2리마을회관"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임야)로서 수원지방법원의 경매목적에 위한 감정평가입니다

2. 대상 물건의 개요

- 토지기본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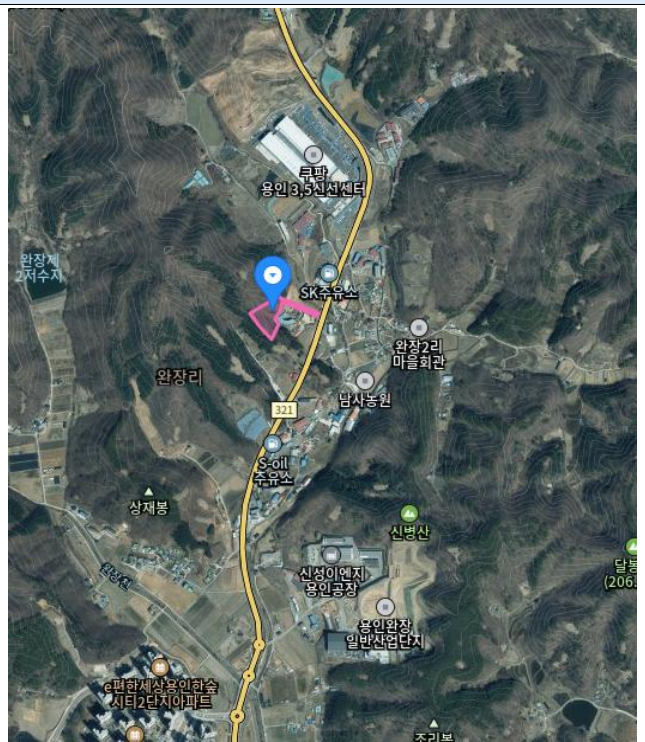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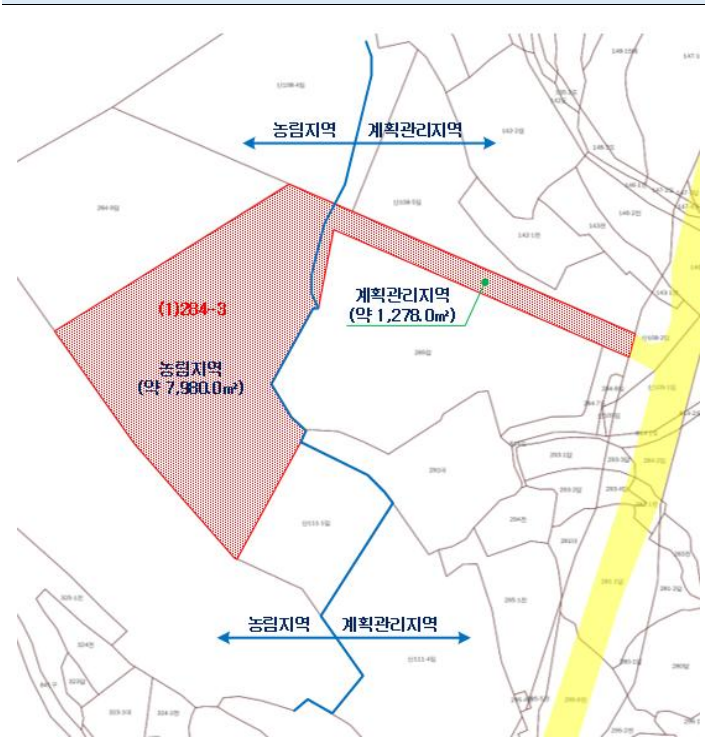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2024-01-01 기준고시>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용도지역	이용 상황	형상 지세	도로 접면	개별공시지가 (원/㎡)	비고
1	완장리 284-3	9,258.0	임	농림지역 계획관리	자연림	자루형 완경사	소로 한면	17,300	-

지적개황도

위성현황도



3. 기준시점

기준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며 본 평가에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4년 06월 07일입니다.

4. 실지조사 및 실시기간 및 내용

실지조사는 대상물건의 소재지에서 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로서, 본건의 실지조사일은 2024년 06월 07일이며 대상 물건에 대한 현황조사와 시장가격 수준 및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 평가의 기준가치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로서, 본 평가에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 같은 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가치” 즉,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6. 감정평가조건

본건 평가에 있어서 별다른 감정평가조건은 없습니다.

II. 감정평가 기준 및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등

1. 감정평가 기준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감정평가에 관한 제 규정 및 일반감정평가이론에 따라 평가하였습니다.

2.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1) 부동산의 감정평가방법

부동산은 그 자산적 특수성으로 인해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적정 시장가치의 산정을 위하여 부동산의 이용상황 등에 따른 개별적 특성에 따라 적절한 감정평가방법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그 구체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거래사례비교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 제12의 2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시장성의 원리에 따라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입니다.

2) 원가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 및 제12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비용성의 원리에 따라 대상 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減價修正), 즉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감가, 기능적감가, 또는 경제적감가 등의 과정을 통하여 기준시점 현재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입니다.

3) 수익환원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0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수익성의 원리에 따라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입니다.

4) 공시지가기준법

토지에 대한 평가방법으로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제9호, 동 규칙 제14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내의 표준지 공시지가 중 평가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과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 요인이 가장 유사한 공시지가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시점수정하고,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등의 가치형성요인과 인근 평가사례, 거래사례 및 시세수준과의 균형 등의 그 밖의 요인을 적용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입니다.

(2)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본건은 토지만에 대한 평가로서 수익환원법 및 원가법의 적용은 적절치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결정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다른 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및 시중시세, 인근 유사 토지의 평가사례 및 경매 낙찰자료 등 각종 자료에 의거하여 그 합리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으며 지상에 소재하는 입목은 거래관행 등을 참작, 임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습니다.

3. 기타사항

- (1) 본건은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여 물적동일성이 인정됩니다.
- (2) 본건 토지는 농림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2개 용도지역에 걸쳐있는바 각 용도지역별로 구분평하되, 해당 용도지역별 편입면적은 토지이용계획도면에 의거하여 개략적으로 산출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바랍니다.(후면 "지적개황도" 참조)
- (3) 본건 평가액 산출과정에서의 평가단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유효숫자 두자리,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숫자 3자리까지 표시하되, 각 물건에 따라 해당 유효숫자 이하에서 반올림 또는 절사하여 적용하였습니다.

Ⅲ.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1. 토지평가액 산출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

1) 비교표준지의 선정

※ 본 평가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및 지리적 위치 등 개별 제요인이 가장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하기 표준지를 본건 평가에 적용할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2024.01.01 기준고시)

기호	소재지	면적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형상지세	도로접면	공시지가 (원/㎡)
A	완장리 산47	6248	임야	농림지역	자연림	사다리 완경사	맹지	10,000
B	완장리 산70	4959	임야	계획관리	자연림	사다리 급경사	맹지	20,200

2) 시점수정

■ 지가변동율

행정구역 및 용도지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농림지역
산정기간		2024-01-01~2024-06-07
기간	지가변동율	비고
2024.01.01 ~ 2024.04.30	3.636	2024.01월~04월의 지가변동을 누계
2024.04.01 ~ 2024.04.30	0.740	2024.04월의 지가변동을 소계
(누계) 2024-01-01 ~ 2024-06-07	4.607 (1.04607)	(1 + 0.03636) * (1 + 0.00740 * 38/30)

행정구역 및 용도지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계획관리지역
산 정 기 간		2024-01-01~2024-06-07
기 간	지가변동율	비 고
2024.01.01 ~ 2024.04.30	2.711	2024.01월~04월의 지가변동률 누계
2024.04.01 ~ 2024.04.30	0.630	2024.04월의 지가변동률 소계
(누 계) 2024-01-01 ~ 2024-06-07	3.531 (1.03531)	$(1 + 0.02711) * (1 + 0.00630 * 38/30)$

※ 2024.05월 이후 지가변동률은 미고시되었는바 직전월인 2024.04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적용 하였습니다.

3) 지역요인 비교

대상 토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 지역에 위치하는바 지역요인은 동일합니다.(1.000)

4) 개별요인 비교

■ 개별요인 비교 항목

조 건 별	항 목	세 항 목
접근조건	교통의 편부	인근역 및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인도의 배치·폭·구조 등,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자연조건	일조, 지세, 방위, 토양, 토질	일조, 통풍,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토양 및 토질의 양부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지정 등의 규제 기타규제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등 기타

■ 개별요인 비교

용도지역별	표준지 기호	개 별 요 인 비 교 (비교표준지 : 1.000기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계
농림지역	A	-	1.50	1.20	-	1.00	1.00	1.800
비 고		대상 토지가 비교표준지에 접근조건 및 자연조건에서 우세합니다.						
계획관리	A	-	1.40	1.50	-	1.00	1.00	2.100
비 고		대상 토지가 비교표준지에 접근조건 및 자연조건에서 우세합니다.						

5) 그 밖의 요인 비교

■ 그 밖의 요인보정의 필요성 및 법적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건설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토정 30241-36538, 1991.12.28), 대법원판례(98두6067(1998.7.10), 92누16300(1993.9.10)) 등에서 인정되는 점을 참작하고 동일수급권을 포함한 인근지역의 거래가격 및 평가 선례와 거래사례 및 인근시세 등과의 형평성이 있는 적절한 가격 산정을 위하여 기타요인 보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산 식

$$\frac{\text{기준시점에서의 사례기준 표준지가격(사례단가 \times \text{시점수정치}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text{기준시점에서의 표준지가격(표준지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치)}}$$

■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및 평가사례(자료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협회)

기호	평가목적	소재지	면적 (㎡)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형상지세	도로조건	평가단가 (원/㎡)	기준시점
①	법원경매	이동읍 목리 산93-2	82.0	임	농림	자연림	부정형완경사	맹지	52,000	2024-03-22
②	시가참고	남사읍 완장리 산22	15,662.0	임	농림	자연림	부정형완경사	맹지	41,000	2022-10-19
③	자산재평가 (IFRS)	이동읍 덕성리 448-26	722.0	임	계획관리	자연림	부정형완경사	세로(가)	406,000	2023-12-31
④	담보	남사읍 완장리 284-14	723.0	임	계획관리	토지임야	부정형완경사	맹지	300,000	2022-08-25

■ 비교사례의 선정

상기 사례 중 본건 토지와 비교하여 용도지역, 이용상황 및 기준시점 등에 따른 토지가치형성 요인이 가장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호 ①,③을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에 적용할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시점수정	사례 기호	행정구역 및 용도지역		산 정 기 간		지가변동율 (%)	적용배수			
	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농림지역		2024-03-22~2024-06-07	1.914	1.01914				
③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계획관리지역		2023-12-31~2024-06-07	3.551	1.03551					
지역요인 비교	비교표준지와 각 비교사례는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합니다.							1.000		
개별요인 비교 (비교사례 =1.000 기준)	표준지 기호	사례 기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계	
	A	①	-	0.90	0.95	-	1.00	1.00	0.855	
	비 고	비교표준지가 비교사례에 비해 접근조건 토지의 경사 등에 따른 자연조건에서 각각 열세입니다.								
	B	③	-	0.70	0.70	-	1.00	1.00	0.490	
	비 고	비교표준지가 비교사례에 비해 접근조건 토지의 경사 등에 따른 자연조건에서 각각 열세입니다.								
그 밖의 요인 보정치결정	산정 기준별	기호	기준단가 (원/㎡)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산정 보정치	결정 보정치	
	사례 기준	①	52,000	1.01914	1.00	0.855	45,310	4.332	4.33	
	표준지 기준	A	10,000	1.04607	-	-	10,460			
	사례 기준	③	406,000	1.03551	1.00	0.490	206,004	9.851	9.85	
	표준지 기준	B	20,200	1.03531	-	-	20,913			
	비 고	비교사례 기준 표준지가액과 기준시점에서의 표준지가액을 기준으로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였습니다.								

6)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

본건 기호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시산가액 (원/㎡)
농림지역	10,000	1.04607	1.00	1.800	4.33	81,530	82,000
계획관리	20,200	1.03531	1.00	2.100	9.85	432,590	433,000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

1) 인근의 거래사례(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용도 지역	이용 상황	형상 지세	도로 조건	토지단가 (원/㎡)	총거래가액 (원)	거래시점
㉠	완장리 산115-1	27,671	임야	농림 지역	자연림	부정형 환경사	맹지	36,138	1,000,000,000	2023-03-19
㉡	완장리 산115-11	1,318	임야	계획 관리	토지 임야	사다리 환경사	맹지	212,443	280,000,000	2022-10-14

※ 상기 사례는 토지만에 대한 거래사례입니다.

2) 비교사례의 선정

상기 거래사례는 본건과 비교하여 지리적위치,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 등에 따른 토지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를 본건 평가에 적용할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3) 사정보정

본건 인근의 평가사례 및 지역 내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의 수준 등으로 보아 본 비교사례가 격은 시장가격 수준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거래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사정보정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1.00)

4) 시점수정 : 지가변동률 (사례 거래시점 ~ 본 기준시점)

사례 기호	행정구역 및 용도지역	산 정 기 간	지가변동률 (%)	시점수정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농림지역	2023-03-19~2024-06-07	13.447	1.13447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계획관리지역	2022-10-14~2024-06-07	13.657	1.13657

5) 지역요인 비교

본 평가대상 토지와 비교사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합니다. (1.00)

6) 개별요인 비교

용도지역별	사례 기호	개 별 요 인 비 교(비교사례 : 1.000 기준)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가로조건	계
농림지역	㉠	-	1.50	1.35	-	1.00	1.00	2.025
비고		본 평가대상 토지가 비교사례에 비해 접근조건 및 토지의 경사 등의 자연조건에서 우세합니다.						
계획관리	㉡	-	1.50	1.20	-	1.00	1.00	1.800
비고		본 평가대상 토지가 비교사례에 비해 접근조건 및 토지의 경사 등의 자연조건에서 우세합니다.						

7)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

용도지역	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농림지역	36,138	1.00	1.13447	1.00	2.025	83,019	83,000
계획관리	212,443	1.00	1.13657	1.00	1.800	434,621	435,000

2. 그 밖의 참고자료

(1) 본건 및 인근 유사 토지의 지가수준

이용상황별	도로조건	용도지역	지가수준 (원/㎡)	비 고
자연림 등	소로한면	농림지역	80,000 ~ 90,000	위치 및 도로조건등에 따라 차등
자연림 등	소로한면	계획관리	400,000 ~ 450,000	위치 및 도로조건등에 따라 차등

(2) 최근 1년간 용인시 처인구의 경매낙찰가 등 관련자료(자료출처:인포케어)

구분	낙찰율(기준:낙찰가)			낙찰율(기준:낙찰건)		
	총감정가	총낙찰가	낙찰율(%)	총건수	유찰건수	낙찰건수(율)
주택	8,271,605,070원	6,271,031,997원	75.8%	23건	11건	12건(52.2%)
집합건물	35,267,100,000원	28,571,073,542원	81.0%	321건	183건	138건(43.0%)
상가	8,272,314,480원	6,138,340,336원	74.2%	28건	21건	7건(25.0%)
공장	16,602,818,320원	14,154,309,890원	85.3%	10건	5건	5건(50.0%)
특수부동산	12,439,951,820원	7,882,019,000원	63.4%	22건	14건	8건(36.4%)
토지	74,078,520,726원	55,150,597,116원	74.4%	254건	165건	89건(35.0%)
- 답	6,189,205,930원	6,275,508,928원	101.4%	19건	7건	12건(63.2%)
- 대지	6,082,446,900원	5,224,541,999원	85.9%	25건	11건	14건(56.0%)
- 임야	53,464,131,396원	37,941,176,289원	71.0%	153건	111건	42건(27.5%)
- 전	8,342,736,500원	5,709,369,900원	68.4%	57건	36건	21건(36.8%)

3. 토지평가액의 결정

토지단가의 결정

각 산정방식별 시산가액(단가, 원/㎡)

용도지역별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
농림지역	82,000	83,000
계획관리	433,000	435,000

시산가액
결정의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시중시세, 유사 평가사례의 수준 및 경매낙찰자료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지역 내의 시장상황에 따른 시장가액 수준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으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범주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주된 감정평가방법(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은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적정성 및 합리성이 인정되는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본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토지평가액의 결정

토지기호	면적 (㎡)		평가단가 (원/㎡)	감정평가액(원)	비 고
	공부	사정			
1	9,258.0	7,980.0	82,000	654,360,000	농림지역
		1,278.0	433,000	553,374,000	계획관리지역
합계	9,258.0	9,258.0		1,207,734,000	-

IV. 감정평가액의 결정

1. 결정 의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은 거래사례, 평가사례 및 지역 지가수준 등에 의거하여 적절하게 산정되었는바, 그 가액산정 과정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본건의 평가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 감정평가액의 결정

구분	기호	지목 용도	면 적 (㎡)		평가단가 (원/㎡)	감정평가액(원)	비 고
			공부	사정			
토지	1	임야	9,258.0	7,980.0	82,000	654,360,000	농림지역
				1,278.0	433,000	553,374,000	계획관리
합 계						₩1,207,734,000.-	

3. 그 밖의 사항

-

[이 하 여 백]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284-3	임야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9,258	7,980	82,000	654,360,000	기존 남사면 →남사읍으로 행정명칭변경 농림지역
						1,278	433,000	553,374,000	계획관리지역
합 계								₩1,207,734,000.-	
				이	하	여	백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소재 "완장2리 마을회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공장 및 물류센터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나 인근 노선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배차간격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인근지 대비 남동측 하향 완경사의 자루형 토지로서 남동측 하단부는 토지임야 상태이고 북서측 후면부는 소나무 등의 잡목이 자생하는 자연림 상태의 토지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남동측으로 왕복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자연마을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7) 공부와의 차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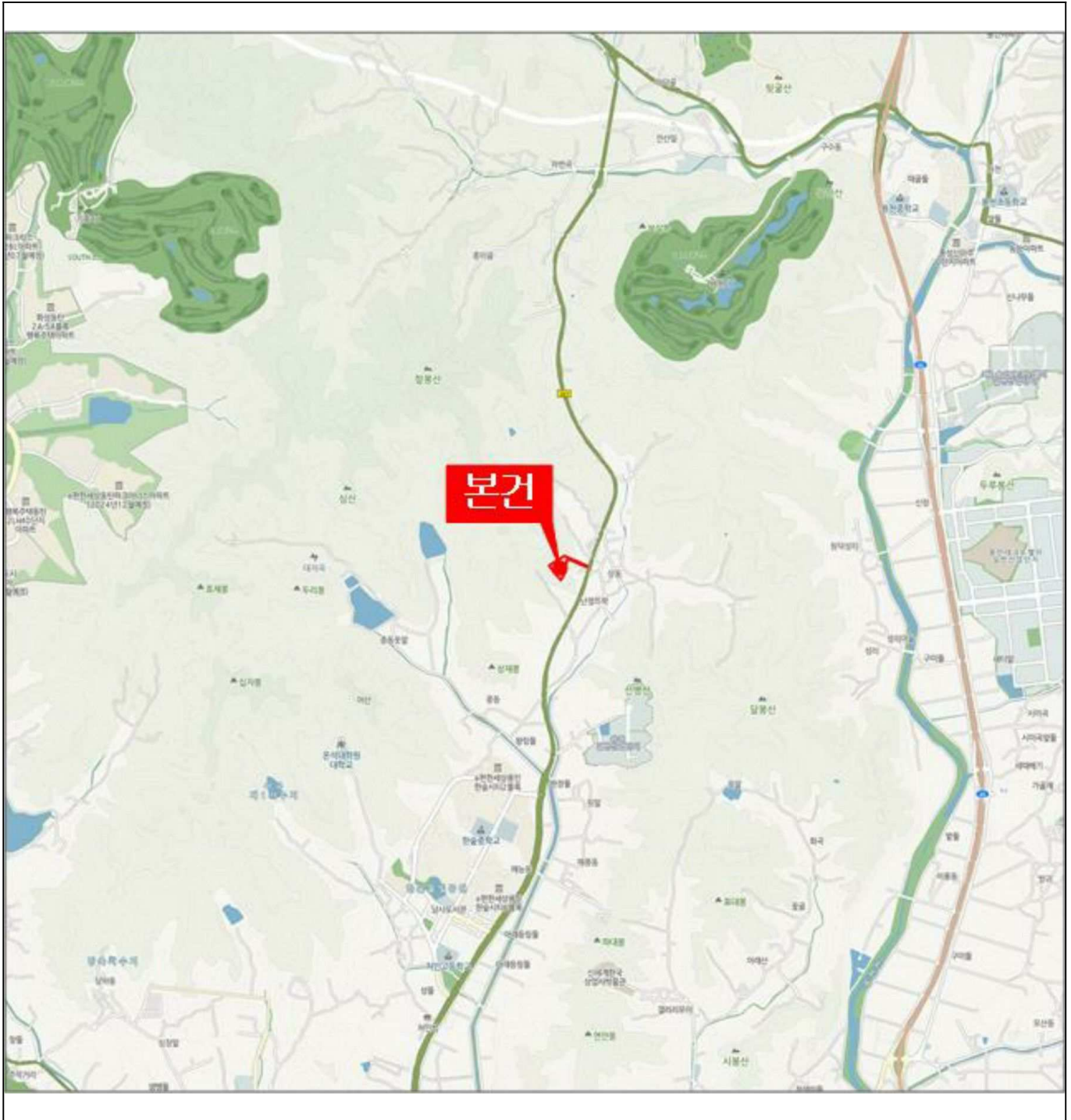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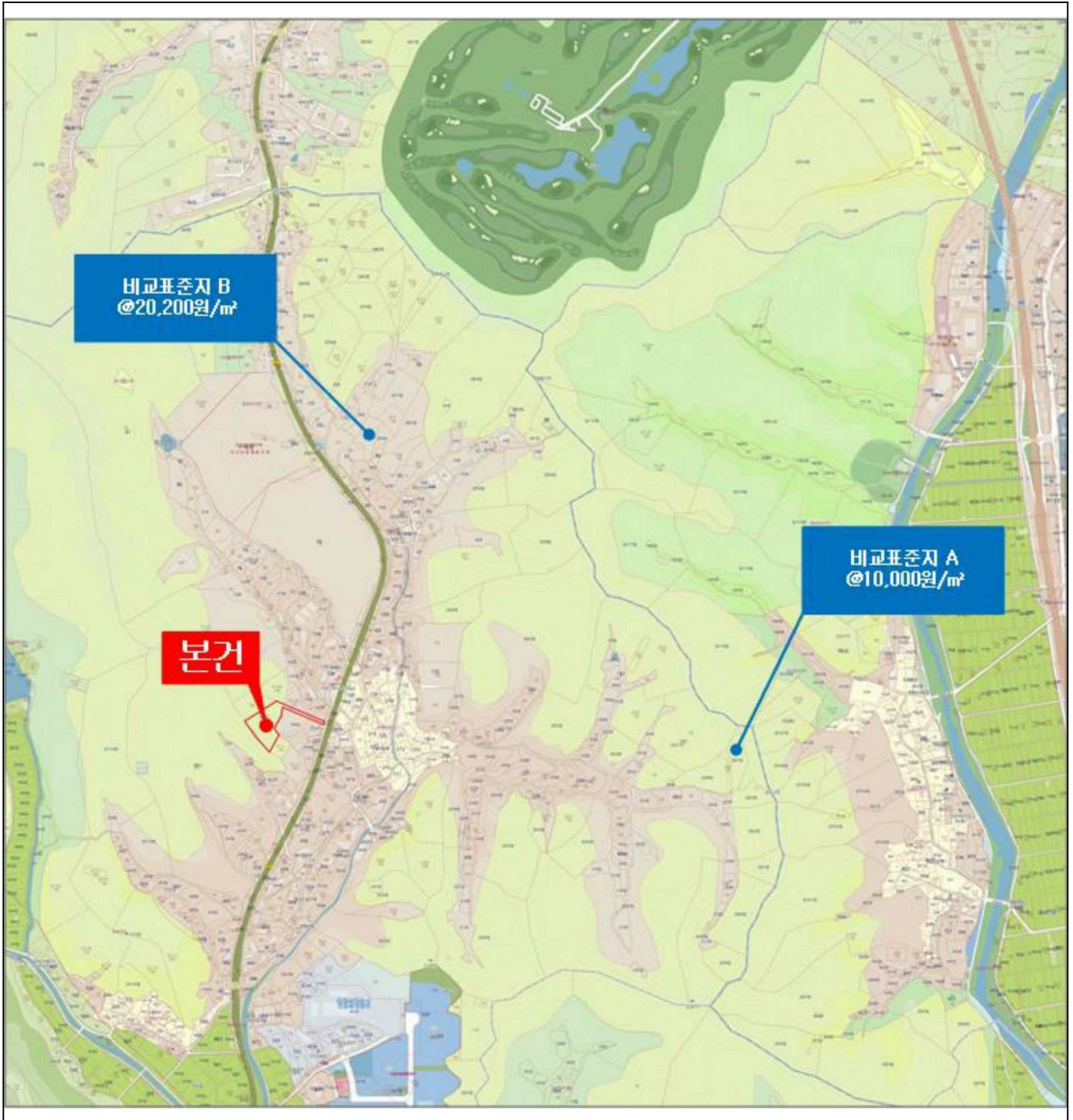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284-3



위치도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284-3
-----	---------------------------



지 적 도

